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20
----------	------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의자 : 유동수 · 김경만 · 김회재  
박찬대 · 양정숙 · 오기형  
이개호 · 이상현 · 이성만  
이용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법에서는 해당 자격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공적기능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현행법에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계법인 설립 시 요구되는 공인회계사의 수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감사반 등 개인사무소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회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사무와 관련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조회 및 회보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 확립(안 제1조의2 신설)

공인회계사의 법적사명 조항을 신설하고,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규정함.

나. 범죄경력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52조)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함.

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안 제26조제2항)

다수의 회계법인 설립 유도를 통한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쟁력 및 업무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함.

라. 일부 직무정지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안 제26조제3항)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회계법인에 소속될 수가 없어 전체 업무에 대한 직무정지처분과 같은 효과가 초래됨. 이에,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개선(안 제34조)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사명) ① 공인회계사는 회계, 감사, 세무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②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는 공공성을 가지며, 공인회계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조력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 중 “10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會計法人은 그 理事외의 者로 하여금 會計에 관한 監查”를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로, “業務”를 “업무”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9조까지”를 “제9조까지, 제9조의2”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사명) ①</p> <p><u>공인회계사는 회계, 감사, 세무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u></p> <p>②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는 공공성을 가지며, 공인회계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노력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u>&lt;신 설&gt;</u>	<p>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6조(이사 등) ① (생 략)</p> <p>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u>10명</u>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u>제1항제2호</u>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p> <p>④ · ⑤ (생 략)</p> <p>第34條(業務의 執行方法) ① 會計法人은 그 理事외의 者로 하여금 會計에 관한 監査 또는 증명에 관한 業務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所屬公認會計士를 會計法人的 補助者로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이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7명</u>-----</p> <p>---.</p> <p>③ -----</p> <p>-----</p> <p>-----</p> <p>---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34조(업무의 집행 방법) ①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p> <p>-----업무-----</p> <p>-----.&lt;단서 삭제&gt;</p> <p>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p>
--	---

